

학생포상 등에 관한 규정

2021.3.3.

이 규정은 교육부 훈령 제321호(2020.1.6.) 제9조, 학교 운영 규정 제31조 및 학업성적 관리 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학생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관되게 처리하여 책무성, 형평성,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전주성심여자중학교
교무행정업무지원팀

학생포상 규정

[개정 2020.4.6., 2021.3.3.]

제1조(명칭·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훈령 제365호 제9조 및 해설, 학교운영 규정 제31조 및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본교 학생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학생포상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하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일관되게 처리하여 책무성, 형평성,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

[본조신설 2020.4.6.]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7.3.10., 2020.4.6.]

[본조신설 2019.3.15.]

[제목개정 2020.4.6.]

제3조(포상의 구분) ① 포상은 별표 1과 같이 시기별로 정시포상과 별표 2와 같이 포상권자별로 교내외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4.6.>

② 정시포상은 이 규정에 따라 학기 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정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3.15., 2020.4.6.>

③ 교내외포상은 포상권자에 따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등의 사항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교내포상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외포상은 제2조 단서에 따라 해당 포상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0.4.6.>

④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든 포상에서 제척한다. 다만, 징계를 상쇄할 만한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0.4.6.>

[전문개정 2017.3.10.]

[본조신설 2020.4.6.]

제4조(정시포상) ① 정시포상은 제3조 단서에 따라 종류, 시기, 선정 기준을 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되, 교내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한다. 이 경우 정시포상의 종류, 시기 및 선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3.15., 2020.4.6.>

1. 각종 학교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인정되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0.4.6.>

2. 각종 교육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인정되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신설 2019.3.15.> <개정 2020.4.6.>

② 정시포상의 종류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2019.3.15., 2020.4.6.>

1. 개근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한다.

가. 1년 개근상은 당해 학년 이내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로 1, 2학년은 중업식, 3학년은 졸업식에 시상한다. 이 경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

사항란에 개근이라 입력한다.

- 나. 3년 개근상은 3년 이내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자로 졸업식에만 시상하되, 1년 개근상과 중복하여 시상하지 아니한다.
 - 다. 3년 정근상은 3년 이내 결석 3일 미만인 자로 졸업식에만 시상하되, 1년 개근상과 중복하여 시상하지 아니한다.
2. 공로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당해 학년도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 나. 3학년 육성종목 학생선수 중 주전으로 해당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회 3위 이상의 입상자
 - 다. 학교 대표로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 라. 학교의 명예를 신장한 공로가 인정되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21.3.3.>
3. 체육상 및 예·기능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체육 분야에서 별표 3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및 육성종목 학생선수 중 해당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한 자
 - 나. 예능 분야에서 별표 3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체육, 예능 외의 각종 분야에서 별표 3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라. 공로상 수상자는 모든 체육상 및 예·기능상 포상에서 제척한다.
4. 이사장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내신 성적 석차 1위 및 석차백분율 2%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나. 징계처분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
 - 다.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정하되, 동점자가 재차 발생할 때는 직전 학기 및 그 이전 학기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정한다.
5. 학교장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내신 성적 석차 2위 및 석차백분율 3%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나. 징계처분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
 - 다.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정하되, 동점자가 재차 발생할 때는 직전 학기 및 그 이전 학기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정한다.
6. 동창회장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내신 성적 석차 3위 및 석차백분율 4%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나. 징계처분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
 - 다.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정하되, 동점자가 재차 발생할 때는 직전 학기 및 그 이전 학기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정한다.
7. 학교운영위원장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내신 성적 석차 4위 및 석차백분율 5%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나. 징계처분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
 - 다.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정하

되, 동점자가 재차 발생할 때는 직전 학기 및 그 이전 학기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정한다.

8. 전북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내신 성적 석차 5위 및 석차백분율 6%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나. 징계처분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
 - 다.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정하되, 동점자가 재차 발생할 때는 직전 학기 및 그 이전 학기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정한다.
9. 한국가톨릭학교장회장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졸업식에만 시상한다.
 - 가. 당해 학년도 학생회 종교부장(이하 “가톨릭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임한 자
 - 나. 징계처분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
10. 봉사상은 다음 각 목의 부문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말에 시상하되, 가산점 부여의 근거로 내신 성적에 반영한다.
 - 가. **인성교육활동** 부문의 경우에는 효행, 선행, 봉사, 예절 등의 인성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개정 2021.3.3.>
 - 나. **진로활동** 부문의 경우에는 꿈 발표회 등의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개정 2021.3.3.>
 - 다. 자율활동유공 부문의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가톨릭학생회장 및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한 학기 이상의 임기가 지속된 자로 당선증 또는 임명장을 근거로 하여 시상한다.
 - 라. 자율활동우수 부문의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학생회 회장 등과 대의원 이외의 자치, 적용, 행사활동 등의 자율활동을 충실하게 참여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마. 동아리활동유공 부문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승인한 자율동아리의 대표 또는 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의 임기가 지속된 자로 해당 동아리별 1명만 시상한다.
 - 바. 동아리활동우수 부문의 경우에는 자율동아리의 대표 또는 기장 이외의 각종 동아리활동을 충실하게 참여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 사. 기타학교활동유공 부문의 경우에는 학교생활의 여러 활동 분야에 한 학기 이상의 유공이 지속되어 인정하는 자
 - 야. 제10호 단서의 모든 봉사상은 학기별로 동일 부문의 기수상자와 중복하여 시상하지 아니한다.
 - 자. 제10호 단서의 모든 봉사상은 학칙에 따라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포상에서 제척한다.
11. 학업우수상은 학기 말 과목별 성적의 석차백분율 5% 이내의 해당 과목을 병기하여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말에 시상하되, 당해 수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12. 학업진보상은 학기 말 과목별 성적의 석차백분율과 기타 추천 기준에 따라 학업의 진보가 인정되는 자로 해당 학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말에 시상한다.
13. 밀알문학상은 시, 수필, 소설 부문별 장원(1위), 차상(2위), 차하(3위), 장려(4위)의 등급(위)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14. 모범상은 **학생자치활동** 부문으로 학생회 **생활자치규칙**에 따라 타의 모범이 되어 추천받은 자로 학기 말에 시상한다. <개정 2020.5.7., 2021.3.3.>

15. 표창장은 다음 각 목의 부문별 선정 기준에 해당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기 말 또는 분기별로 시상한다.

가. **캠페인활동** 부문의 경우에는 생활인권안전부 및 학생회 주관의 기본 생활 습관 정착 캠페인 활동을 충실하게 참여한 자로 해당 학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별 1명만 분기별로 시상한다. <개정 2021.3.3.>

나. **자기주도학습활동** 부문의 경우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여 충실하게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지속한 자로 해당 학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말에 시상한다. <개정 2021.3.3.>

다. **자유학기활동** 부문의 경우에는 **영역별 자유학기 활동**을 충실하게 참여한 자로 1학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 말에 시상한다. <개정 2021.3.3.>

③ 제3조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기별 정시포상과 포상권자별 교내외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 하되, 교내포상은 교육부 훈령 제365호 및 학생포상 규정에 따라 교내 학교장상 사전등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3.15., 2020.4.6., 2020.5.7., 2021.3.3.>

[전문개정 2017.3.10., 2020.4.6.]

[본조신설 2019.3.15.]

[제목개정 2020.4.6.]

제5조(교내외포상) ① 제3조 단서에 따라 포상권자별로 교내포상과 교외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 하되, 교내포상은 교육부 훈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내 학교장상 사전등록제로 운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3.15., 2020.4.6.>

② 교외포상은 제2조 및 제4조 단서에 따라 해당 포상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시행 한다. <신설 2020.4.6.>

[전문개정 2017.3.10., 2020.4.6.]

[본조신설 2019.3.15.]

[제목개정 2020.4.6.]

제6조(교내 학교장상 사전등록제) ①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모든 교내 학교장상은 수상대장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란에 입력하되, 모든 교외포상은 수상대장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란에 입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모든 교내외포상과 관련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5., 2020.4.6.>

② 교내 학교장상 사전등록제는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명, 수상비율, 시행 월(시행연월일),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의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 되, 별표 2와 같이 시행한 교내 학교장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란에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5., 2020.4.6.>

1. 수상비율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학기 개학 후 30일 이내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란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0.4.6.>
3. 삭제 <2020.4.6.>
4. 삭제 <2020.4.6.>

[본조신설 2015.3.1., 2019.3.15.]

[전문개정 2017.3.10.]

부칙 <2020.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경과규정은 매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교육부 훈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매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타법개정) 이 규정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정) 학생포상 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본문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신설한다.
2.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및 별지를 신설한다.

부칙 <2021.3.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법개정) 이 규정은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와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 학생포상 규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본문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을 신설한다.
2. 본문 제4조제2항제14호, 별표 1 및 2를 일부 개정한다.

별표 / 별지

[별표 1] 시기별 정시포상 시행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포상권자별 교내외포상 시행 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교내·정시포상(예·체·기능상) 대상자 선정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내·정시포상 대상자 추천서(예시)

[별지 제2호서식] 교외·정시포상 대상자 추천서(예시)

시기별 정시포상 시행 기준(제3조 관련)

연번	수상명(부문)	등위	시행월(수상연월일)	세부 기준	비고
1	봉사상(인성교육활동)		방학식, 내신산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인성교육활동 우수자	-교무부 주관 -사정회 심의
2	봉사상(진로활동)		꿈 발표회 시행일	-꿈 발표회 입상자	-교무부 주관 -사정회 심의
3	봉사상(자율활동유공)		겨울방학식, 내신산출기 준일 ※중복수상 불가	-자율활동 유공자 -당선증 또는 임명장으로 상장 대체	-교무부 주관 -사정회 심의
4	봉사상(자율활동우수)		방학식, 내신산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자율활동 우수자	-교무부 주관 -사정회 심의
5	봉사상(동아리활동유공)		방학식, 내신산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동아리활동 유공자	
6	봉사상(동아리활동우수)		방학식, 내신산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동아리활동 우수자	
7	봉사상(기타학교활동유 공)		방학식, 내신산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기타 학교활동 유공자	
8	학업우수상	교과목명	방학식	-학기 말 과목별 성적의 석차백분율 5% 이내 인 자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함	-연구부 주관 -사정회 심의 -우수교과명 자동 입력
9	학업진보상		방학식	-학년별 학기 말 성적 진보한 자 -학년/학기 말 성적 석차백분율 및 기타 기준	-연구부 주관 -각 학년협의회 심의
10	밀알문학상(시) 밀알문학상(수필) 밀알문학상(소설)	장원-장려 장원-장려 장원-장려	밀알문학상 작품공모전 시행일	-밀알문학상 부문별 등위별 입상자 ※부문별 장원(1위) 차상(2위), 차하(3위), 장려(4위)	-국어교과협의회 주관
11	모범상(학생자치활동)		방학식	-학생자치활동 우수자	-생활인권안전부 주관
12	표창장(캠페인활동)		분기별	-학년별 기본생활캠페인 활동 우수자	-생활인권안전부 주관 -각 학년협의회 심의
13	표창장(자기주도학습활 동)		방학식	-스터디 플래너 활용 자기주도학습활동 우수자	-연구부 주관 -각 학년협의회 심의
14	표창장(자유학기활동)		방학식	-자유학기(년)제 영역별 교육활동 우수자	-연구부 주관 -1학년협의회 심의
15	개근상(1년 개근)		종업식(1, 2학년)	-당해 학년 이내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 무한 자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 출결상황 특기 사항란에 개근 입력함.
16	개근상(1년 개근)		졸업식(3학년)		
17	개근상(3년 개근)		졸업식	-3년 이내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1년 개근상과 중복수상 불가	-사정회 심의
18	정근상(3년 정근)		졸업식	-3년 이내 결석 3일 미만인 자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 3회는 결석 1일 -1년 개근상과 중복수상 불가	-사정회 심의
19	공로상		졸업식	-학생회 회장·부회장 -학생선수 중 주전으로 전국 대회 3위 이상 의 입상자 -학교 대표로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사정회 심의
20	체육상		졸업식	-체육 분야에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정회 심의 -별표 3 참조
21	예능상			-예능 분야에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22	기능상			-체육, 예능 이외의 각종 기능 분야에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23	이사장상		졸업식	-내신 성적 석차 1위 -징계처분이 전무한 자	-사정회 심의 -동점자 발생 시 3학년 2학기 교과 성적 기준 -재차 발생 시 직전 학 기 및 그 이전 학기 교과 성적으로 순차적 적용
24	학교장상		졸업식	-내신 성적 석차 2위 -징계처분이 전무한 자	
25	동창회장상		졸업식	-내신 성적 석차 3위 -징계처분이 전무한 자	
26	학교운영위원장상		졸업식	-내신 성적 석차 4위 -징계처분이 전무한 자	
27	전북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상		졸업식	-내신 성적 석차 5위 -징계처분이 전무한 자	
28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상		졸업식	-학생회 종교부장(기독교학생회장) -징계처분이 전무한 자	

포상권자별 교내외포상 시행 기준(제3조 관련)

1. 교내포상(학교장상)

순	수상명(부분)	등위	수상연월일	참가대상 (참가인원)	수상 비율	담당 부서	공개 방식	상장 출력	비고
1	봉사상(인성교육활동)		방학식, 내신산 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전교생(-명)	20% 이내	교무부	홈페이지	○	인성교육활동 우수 자
2	봉사상(진로활동)		꿈 발표회 시행 일	3학년(-명)	4% 이내	진로상담인성부	홈페이지	○	-꿈 발표회 입상자
3	봉사상(자율활동유공)		겨울방학식, 내 신산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전교생(-명)	20% 이내	생활인권안전부	홈페이지	○	-자율활동 유공자 -근거: 당선증/임명 장
4	봉사상(자율활동우수)		방학식, 내신산 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전교생(-명)	20% 이내	교무부	홈페이지	○	자율활동 우수자
5	봉사상(동아리활동유공)		방학식, 내신산 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전교생(-명)	20% 이내	교무부	홈페이지	○	동아리활동 유공자
6	봉사상(동아리활동우수)		방학식, 내신산 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전교생(-명)	20% 이내	교무부	홈페이지	○	동아리활동 우수자
7	봉사상(기타학교활동유공)		방학식, 내신산 출기준일 ※중복수상 불가	전교생(-명)	20% 이내	교무부	홈페이지	○	기타 학교활동 유 공자
8	학업우수상	교과목명	방학식	2, 3학년(-명)	과목별 석차백분율 5% 이내	교무부	홈페이지	○	해당 과목 병기
9	학업진보상		방학식	2, 3학년(-명)	학년별 10% 이내	연구부	홈페이지	○	당해 학년도 학업 성적 기준
10	밀알문학상(시)	장원-장려	밀알문학상 작품 공모전 시행일	전교생(-명)	20% 이내	국어과	홈페이지	○	부문별 등위 : 장원(1위), 차상(2위), 차하(3위), 장려(4위)
11	밀알문학상(수필)	장원-장려							
12	밀알문학상(소설)	장원-장려							
13	모범상(학생자치활동)		방학식	전교생(-명)	20% 이내	생활인권안전부	홈페이지	○	학생자치활동 우수 자
14	표창장(캠페인활동)		분기별	전교생(-명)	4% 이내	생활인권안전부	홈페이지	○	기본생활캠페인 우 수자
15	표창장(자기주도학습활동)		방학식	전교생(-명)	20% 이내	연구부	홈페이지	○	스터디플래너 활용 자기주도학습활동 우수자
16	표창장(자유학기활동)		방학식	1학년(-명)	20% 이내	연구부	홈페이지	○	자유학기(년)제 영 역별 교육활동 우 수자
17	개근상(1년 개근)		종업식(1, 2학년)	1, 2학년(-명)				×	
18	개근상(1년 개근)		졸업식	3학년(-명)	20% 이내	교무부	홈페이지	○	
19	개근상(3년 개근)		졸업식	3학년(-명)	20% 이내	교무부	졸업식 팸플릿	○	
20	정근상(3년 정근)		졸업식	3학년(-명)	20% 이내	교무부	졸업식 팸플릿	○	
21	학교장상		졸업식	3학년(-명)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 3% 이내	교무부	졸업식 팸플릿	○	내신 성적 석차 2 위
22	체육상		졸업식	3학년(-명)	20% 이내	교무부	졸업식 팸플릿	○	-별표 3 참조 -공로상과 중복수 상 불가
23	예능상		졸업식	3학년(-명)	20% 이내	교무부	졸업식 팸플릿	○	
24	기능상		졸업식	3학년(-명)	20% 이내	교무부	졸업식 팸플릿	○	
25	공로상		졸업식	3학년(-명)	20% 이내	교무부	졸업식 팸플릿	○	-학생회 회장·부 회장 -학생선수 중 주전 으로 전국 대회 3 위 이상의 입상자 -학교 대표로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2. 교외포상(이사장상 등)

연번	수상명	시행월(수상연월일)	참가대상 (참가인원)	수상 비율	담당 부서	비고
1	이사장상	졸업식	3학년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 2% 이내	교무부	내신 성적 석차 1위
2	동창회장상 제0000-동창-00호	졸업식	3학년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 4% 이내	교무부	내신 성적 석차 3위
3	학교운영위원장상 제0000-학운-00호	졸업식	3학년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 5% 이내	교무부	내신 성적 석차 4위
4	전북시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상	졸업식	3학년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 6% 이내	교무부	내신 성적 석차 5위
5	한국가톨릭학교장회장상	졸업식	3학년	3% 이내	교무부	학생회 종교부장
7	국회의원상 등 기타 교외포상	졸업식	3학년	3% 이내	교무부	해당 기관 포상 규정

체육상 및 예·기능상 대상자 선정 기준(제4조 관련)

주최 기관별 입상 횟수			비고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기타 관계기관	
2회			
1회	1회		
	1회(1위)		※교감의 추천 가능
	2회		
1회		2회	※전국 대회 1회 포함
	1회	2회	
		전국 대회 2회	※지도교사 의견 첨부

※선정 시 유의사항

1. 체육상 및 예·기능상은 공로상과 중복으로 수상이 불가하다.
2. 육성종목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해당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을 때는 각종 대회의 입상 실적과 무관하게 체육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로상 수상자는 해당 포상에서 제척한다.
3. 위의 기준 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교내·정시포상 대상자 추천서(예시)

1. 대상

소속	학번	성명	학번	성명
전주성심여자중학교	3000	정○우	3000	김○지

2. 구분

포상 구분	교내·정시	수상명	공로상
추천 사유	2017학년도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성실히 책임을 다하였으며,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공헌함.		

위 학생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추천자 직위: **부장교사** 성명: **송승완** (서명)

전주성심여자중학교장 (직인)

교외·정시포상 대상자 추천서(예시)

1. 대상

소속	학번	성명	학번	성명
전주성심여자중학교	3000	최○은		

2. 구분

포상 구분	교외·정시	수상명	한국가톨릭학교장회장상
추천 사유	2019학년도 학생회 종교부장으로 성실히 책임을 다하였으며, 가톨릭학생회를 탁월한 리더십으로 운영하여 행복한 가톨릭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공헌함.		

위 학생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추천자 직위: **부장교사** 성명: **하윤정** (서명)

전주성심여자중학교장 (직인)